

대학의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운영규정

2022.05.03.제정 2022.07.12.일부개정 2022.10.01.일부개정 2023.08.28.폐지

<미래융합대학>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원받는 동명대학교(이하 '본 대학교'라 한다)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(이하 '사업'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「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사업관리 운영 매뉴얼」에 따른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추진과 사업비 관리·집행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사업기간) 사업기간은 본 대학교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간의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권한과 책임) 총장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

1.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
2. 사업의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 관리·지원
3.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, 재정적 제도의 정비
4. 사업비의 총괄적인 집행 및 관리
5. 본 사업 관련 규정 및 협약사항 준수
6.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
7. 사업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
8.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정하는 사항

제5조(조직) ①사업총괄책임자는 미래융합대학장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
2. 사업실적 및 성과관리 총괄
3. 그 밖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

②미래융합대학에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제규정 제18조 제5항에 의거하여 교학지원팀과 성인학습지원센터를 둔다.(개정 2022.07.12.)

③미래융합대학 산하에 직제규정 제18조의11과 제18조의12에 의거하여 평생교육원과 세계선센터를 두며,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④미래융합대학 교학지원팀에는 팀장을 두고, 팀장은 사업 운영총괄, 사업비 관리 및 집행 등

사업수행 전반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며,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교원 또는 직원(일반계약직원, 연구계약직원 포함)을 둘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⑤성인학습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,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(개정 2022.07.12.)

1. 성인학습자 친화적 교수학습방법 개발 및 보급
2. 학습경험인정제(RPL) 설계·도입 및 운영
3. 기초학습지원 및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
4. 학습 및 심리상담
5. 학습이력관리 및 경력개발 지원 등
6. 비학위과정 및 비교과프로그램 운영
7. 성인창업연계전공 운영

⑥삭제 <2022.07.12.>

⑦삭제 <2022.07.12.>

제6조(사업추진위원회) ①사업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사업추진위원회를 둔다.

②위원장은 총장이 되며,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는 교무위원급인 교육부총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학생처장, 입학홍보처장, 사무처장, 미래융합대학장, 미래융합대학 교학지원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3명을 위촉한다.

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(개정 2022.07.12.)

1.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심의
2. 삭제 <2022.07.12.>
3. 삭제 <2022.07.12.>
4. 자체평가 결과 심의 및 환류에 관한 사항
5. 삭제 <2022.07.12.>
6. 그 밖에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사항

⑥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⑦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자체평가위원회) ①사업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.

②위원회는 미래융합대학장을 위원장으로 하며,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회는 재정총괄실장, 교무부처장, 기획평가팀장, 재정운영팀장, 미래융합대학 교학지원팀장, 성인학습지원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2명을 위촉한다.(개정 2022.07.12., 2022.10.1.)

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

다.

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업성과 및 실적평가를 위한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
2. 성과목표 달성 여부 및 사업 추진 실적 분석
3.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또는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 및 조치계획 수립
4.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
5. 그 밖에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⑥위원회는 연차평가, 종합평가 실시 전에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(개정 2022.07.12.)

⑦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미래융합위원회) ①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세부사업 수행을 위하여 미래융합위원회를 둔다.

②위원회는 미래융합대학장을 위원장으로 한다.

③위원은 미래융합대학 각 학과장, 각 센터장, 교학지원팀장으로 구성하여 위촉하고, 위촉기간은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.(개정 2022.07.12.)

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(개정 2022.07.12.)

1. 사업계획서, 연차평가보고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등 작성
2. 사업 추진계획 및 예산계획 수립 및 추진
3. 사업예산 변경(항목내, 항목간) 심의
4. 사업시행 과정과 성과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및 사업비 집행점검
5. 대학의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운영규정 및 사업비 집행지침 제·개정

제9조(성과협력위원회) ①대학본부와 학내 각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한 사업 인식제고와 성과 향상을 위하여 본부 유관부서, 타 단과대학, 재학생으로 구성된 성과협력위원회를 둔다.

②위원회는 미래융합대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재정운영팀장, 미래융합대학 교학지원팀장, 성인학습지원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부서로부터 추천받은 구성원 및 재학생 1명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위촉하고, 당연직 위원의 위촉기간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추천 위원 위촉기간은 추천부서 근무기간으로 한다. (개정 2022.07.12., 2022.10.1.)

③위원회는 학기별 2회이상 개최하여 소통하고 협력한다.

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성인학습자 친화형 교육과정 운영 협력
2. 학사제도 유연화를 위한 제도개선 협력
3.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의 대학 내 구축 및 체질 개선을 위한 부서별 유관업무 협력

제10조(사업 관리) ①사업비는 사업계획서에 편성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, 운영비의 일부를 다른 회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.

②사업비 집행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「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사업관리 운영 매뉴얼」 및 대학의 예산·회계 관련 규정과 지침 및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관리지침에 따른다.

③사업을 위해 채용된 비전임 교원 및 계약직원에게 사업수행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.

④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시 구성원의 의견수렴(설명회, FGI, 수요조사 및 만족도 조사, 워크숍 등)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.

제11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대학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5월 3일부터 시행하되, 제5조 조직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시행일인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본 대학교에서 이 규정 시행 전 시행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8월 28일부터 폐지한다.